

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: 2010년 10월 31일

개정: 2011년 11월 1일

개정: 2012년 12월 1일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대신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 및 위원회설치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.

(2020.12.1. 개정)

② 위원은 교직원(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포함)·학생·관련전문가(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),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 단,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2분의 1 초과 할 수 없으며, 학생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(2011. 11. 1 일부개정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11. 11. 1개정)

제6조(임기)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(2020.12.1. 개정)

2. 기타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2020.12.1. 개정)

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(2011. 11. 1 개정)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

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결과보고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총장은 등록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,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)

② 본교의 이사장 및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(2011. 11. 1 개정)

제10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.(보존기간 5년)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총무과(경리)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학사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.(2020.12.1. 개정)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(비밀의 유지)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 준칙은 2010년 1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